

##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1. 제안이유

-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공동급수 할 수 있는 능력, 역할이 미비하여 공동급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함.
- 급수공사 신청·승인을 군수에게 득 하도록 하는 등 온천수 공급에 따른 행정절차가 세약이 됨.
- 온천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적격 업체 등의 시공으로 부실, 하자공사 발생할 우려가 됨으로 급수공사 자격을 명시코자 함.

### 2. 주요골자

- 온천공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온천공소유자등 자본이 열악하여 공동급수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권자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조 1항)
- 이용 허가자는 온천수 급수공사를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공동급수권자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도록 함으로써 석차의 간소화 도모(안 제9조 1항)
- 온천수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화순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체로 명시함.(안 제9조 2항)

##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공급"을 "공급 및 공급자 자격"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온천공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 시설(채수장치, 배수장치, 급수 장치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급수권자는 급수공사 신청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는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온천수의 공급)  <u>(1) 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 하게 할 수 있다.</u></p> <p><u>(2)(생략)</u></p> <p>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u>(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2) 군수는 급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3) 급수전을 분리되며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4)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자는 설계수수료를 천납하여야 한다.</u></p> <p><u>(5) 제4항에 의하여 천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제3조(온천수의 공급방식 및 공급자 자격)  <u>(1) 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온천공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채수장치 배수장치 급수장치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급수 하게 할 수 있다.</u></p> <p><u>(2) (현행과 같음)</u></p> <p>제9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u>(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급수권자는 급수공사 신청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2) 급수공사는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만 할 수 있다.</u></p>